



#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출산·육아휴직급여 등

“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 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1. 출산휴가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 관련 법률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2.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출산휴가기간과 달리 육아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보상적 개념의 휴가이므로 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로, 1년 중 6월만 육아휴직을 하고 나머지 6월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6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3.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 1) 평균임금산정

법정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

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육아휴직기간 중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곧바로 퇴사하거나 퇴사시기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의 산정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휴가나 휴직 전 평균임금보다 적어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종료 후 곧바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평균임금은 휴가·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3월간 총일수로 나누어 일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2개월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2개월간의 임금총액만을 2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2) 퇴직금 산정시 휴가 및 휴직기간의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노사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위반의 합의로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4.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1) 급여의 산정기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8시간 미만)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과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 2) 출산휴가급여

### ① 지급요건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로,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기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급여액

사업장마다 월통상임금은 다르나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현재 135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최초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기업의 월통상임금 100%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 = 사업주 부담). 단,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2017. 1. 1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0만원(시행일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고용보험([www.eigo.kr](http://www.eigo.kr)) 홈페이지 급여 계산기

### 3) 육아휴직급여

## ① 지급요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 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②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일시에 40%를 모두 지급하지는 않고 75%는 휴직기간 중 급여로,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월 이상 근무한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통상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라고 불리는 데 ‘남성’이 요건은 아니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2016년 7월 이후 출생자부터는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가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해당 급여는 육아휴직 중 최초 3개월에 한하며 75%, 25%가 아닌 100%

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행정법원 판결(서울행법 2016구단60150)은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므로 휴직 종료일 12개월 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는 있습니다.❸

※ 월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 75만원은 휴직기간 중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 25만원은 복직 후 6월간 근무한 이후 25만원×6월분하여 일시 지급



[www.theoneehr.co.kr](http://www.theoneehr.co.kr)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파트너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홍 수 경

Tel : 02-3482-3200 Fax : 070-8875-3200 Mobile: 010-2313-0757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7층 (135-839)